

##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 공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 계획을 승인 및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 1. 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 시범사업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 사업내용 :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여 여객 운송 서비스와 물류 배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차량이 접근할 수 없는 경로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 규제특례
  - 「도로교통법」 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충분한 보도 폭 확보, 불량노면에 대한 정비,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의 배달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충분한 보도 폭이 확보된 장소만 실증코스 지정, 안내판 부착, 주행속도 설정, 안전대책 강구,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시 실증 중단, 실내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자율주행 배달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안내판 설치, 영상 촬영시간·범위 등을 최소한으로 제한,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실증사업자 : (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컨소시엄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5개월

### 2. 포항형 DRT 및 택시 호출 플랫폼 구축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승인

- 사업내용 :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와 택시 호출 플랫폼을 연계 운영하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빌리티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항시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에 대해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상생방안 검토,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4)의 이행여부 점검, 책임보험 가입, 사고발생에 대한 대비책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실증사업자 : 아우토크립트(주) 컨소시엄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8개월

### 3.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 사업내용 : 계단, 둔턱 등 장애물 극복이 가능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음식 및 물품 등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화성시 내 실증지역을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스마트실증사업 수요 발생으로 스마트실증사업 실증 지역을 추가(태안군)
- 규제특례 (변경없음)
  - 「도로교통법」 관련 ‘배달로봇의 보도통행 허용’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확보, 명확한 실증코스 지정 및 보도 폭 확보, 현장요원 운전자 지정, 안내판 설치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관련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 제공 허용’을 지자체 협의, 보도 폭 확보, 안내판 설치, 주행속도 조정, 보험가입, 안전사고 발생 시 실증 중단, 실내안전성 테스트 검증 실시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로봇 주행시 이동형 영상장치 촬영 허용’을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 활용 후 즉시 삭제, 녹음기능 미사용, 관리 감독체계 마련 등을 조건으로 특례 허용
- 실증사업자 : 모빈 주식회사 (변경없음)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5, 창업보육센터 411호)
-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24개월 (변경없음)

### 4. 경기도 통합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스마트실증사업 계획 변경승인

- 사업내용 :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생활반경을 기반으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이용자 수요에 따라 전 구간 운행노선을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타 이동수단과 연계하는 근거리 이동 통합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를 경기도 관내 7개 지자체 (수원, 고양, 화성, 안산, 평택, 하남, 양주)를 대상으로 실증
    - 변경내용 : 추가 발생한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증지역을 추가(과주, 부천, 시흥, 안양, 여주, 의정부, 이천, 김포, 남양주 등)
  - 규제특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행 허용지역 한시적 확대 허용’ (변경없음)
  - 실증사업자 : 현대자동차(주) 컨소시엄 (변경없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릉로 12)
  - 실증사업 기간 : 사업개시일부터 48개월 (변경없음)
- ### 5. 스마트 슈즈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토큰 서비스 플랫폼 스마트실증사업계획 변경승인
- 사업내용 : 스마트 슈즈로 사용자의 일상 활동정보를 수집하고 활동량에 따라 마이리지(건강토큰)을 지급하는 건강활동 플랫폼 (변경없음)
  - 규제특례 : 수집된 정보는 공익사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의료 기관-환자-환자가족 간 계약서 작성 및 정보 제공 시 마다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얻는 조건하에 최초 1회 환자 동의 등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 (변경없음)

○ 실증사업자 : (주)엘에스네크웍스 컨소시엄  
(주소 :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 428)

- 변경내용 : 원활한 스마트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공동사업기관 일부 변경(동아대학교산학협력단 → 신라대학교산학협력단)

○ 실증사업 기간 : 48개월 (변경없음)